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0560 제출연월일: 2025. 5. 20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와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및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이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562호) 및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56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"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(이하 "안전성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"를 "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57조(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사·심의(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문한 사항에 한정한다)
 - 가.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
 - 나.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
 - 다. 농약 · 중금속 등 유독 ·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
 - 라.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
 - 마.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
 - 2.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

- 가.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(이하 "어린이식생활법"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, 도안 또는 문구 등에 관한 사항
- 나. 어린이식생활법 제26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 획에 관한 사항
- 다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
- 3. 다음 각 목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사항에 관한 조사· 심의
 - 가.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사항
 - 나. 어린이식생활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 한 사항
- 다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58조제1항 중 "100명"을 "200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을 "각 호의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 - 이 경우 제1호의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 - 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

또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

- 5. 다음 각 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가. 식품위생·식품영양
 - 나.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, 용기·포장,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의 표시·광고
 - 다. 유전자변형식품등

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⑤ 분과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것으로 본다.

제90조의4 중 "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"를 "심의위원회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

- 에 심사 요청된 사항은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조사 신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.
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.
-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9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제18조(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 제18조(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 성 심사 등) ① (생 략) 성 심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 ----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 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안전성심사위원회(이하 "안전 다. 성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③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 <삭 제>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 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④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<삭 제>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1.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 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

- 2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의 추천을 받은 사람
- 3.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
- ⑤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해당 직(職)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한다.
- ⑦ (생 략)
-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ㅣ <삭 제> 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 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(9) (생략)
- 제57조(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 제57조(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 의위원회를 둔다.
 - 1.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. 농약ㆍ중금속 등 유독ㆍ유해 | 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

<삭 제>

<삭 제>

(7) (현행과 같음)

⑨ (현행과 같음)

치 등)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 항을 조사 · 심의하기 위하여 식 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 회를 둔다.

> 1.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 사・심의(나목부터 마목까지 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자문한 사항에 한정한다)

사항

- 3.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 한 사항
- 4.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 요 사항
- 가.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
- 나.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
 다. 농약·중금속 등 유독·
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
 에 관한 사항
- 라.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
- <u>마.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</u> 중요 사항
- 2.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 의
 - 가.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(이하 "어린이식 생활법"이라 한다)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, 도안 또 는 문구 등에 관한 사항
 - 나. 어린이식생활법 제26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다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
- 3. 다음 각 목에 따른 식품의약

를 받도록 한 사항

제58조(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 제58조(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 영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│ 명 -----.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② -----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다 만,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 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, 제2 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 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 여야 한다.

1. • 2. (생 략)

품안전처장의 자문사항에 관 한 조사 · 심의 <u>가.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</u> 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나. 어린이식생활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 문하는 사항 영) ① ---------- 200 각 <u>호의</u> -----경우 제1호의 식품위생 관계 공 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 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 람

- 4. (생략)
- 5.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

③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④ ~ ⑥ (생 략)

제90조의4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제90조의4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

- 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「소비자기본 법」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 람
- 4. (현행과 같음)
- 5. 다음 각 목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가. 식품위생 · 식품영양 나.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, 용기 · 포장,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의 표시 · 광고 다. 유전자변형식품등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⑤ 분과위원회가 심의・의결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 • 의 결한 것으로 본다.
- ⑥ ~ ⑧ (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

의제) <u>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</u>	의제) <u>심의위원회</u>
<u>의위원회</u> 의 위원 중 공무원이	
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	
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	
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	